

FTA는 우리기업이 값싸게 해외 원료를 조달하고,  
관세부담 없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상호간 관세인하 협정입니다.

# 관세청과 함께하는 신나는 FTA 100% 활용



국민소득 증대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원자료 저가 구입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약어로서,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호간 교역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  
※ 관세 철폐 또는 인하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증대, 소득증대, 일자리 확대

## FTA 추진현황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FTA 교역비중이 향후 전체 무역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의 중요성 증가  
(단위 : %)

구분	발효중 (16개국)	협상타결 (28개국)	협상중 (22개국)	여건조성 (7개국)
국가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러시아, Mercosur, 터키
교역비중	13	21	25	19
누적비중	13	34	59	78

## FTA 발효국가 : 16개국 (2010. 3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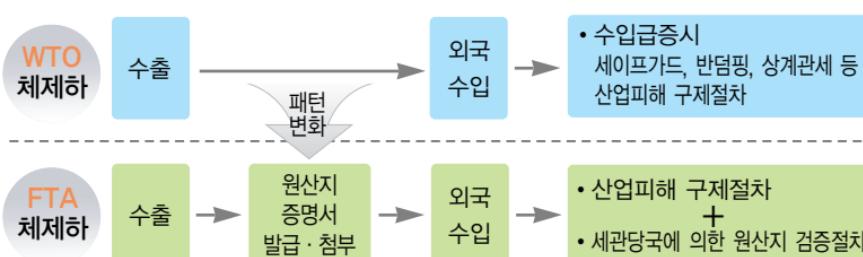
\* EFTA(4개국)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 ASEAN(10개국)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FTA 법령체계

협정 (국제법)	국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칠레 FTA</li><li>한·싱가포르 FTA</li><li>한·아세안 FTA</li><li>한·EFTA FTA</li><li>한·인도 CEPA</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FTA 관세특례법 (기획재정부 소관)</li><li>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소관)</li><li>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소관)</li><li>FTA 관세특례법 이행고시 (관세청 소관)</li></ul>

## FTA체제하의 수출입 및 국내기업 보호패턴 변화



※ 산업피해 구제절차 보다 세관의 원산지 검증절차 중요성 증가



## FTA 협정관세 활용

### ○ 기본요건

거래요건	역내 거주자가 당해물품을 수출 또는 발송하고 수입할 것
품목요건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원산지요건	협정에 정해진 일반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것
운송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간에 직접 운송될 것 (환적허용)
절차요건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적용신청 시기 등을 충족시킬 것

### ○ 적용신청

#### • 수입신고 수리전

: 협정에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



#### • 수입신고 수리후

: 미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일단 실행관세율로 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음  
※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 제출

####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



#### • 수출신고 시

: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발급받아야 함

#### 〈 FTA 수출 절차 〉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일반 원산지증명서와는 양식이 다름
- 발급방식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발급방식 · 서식 · 유효기간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FTA별 발급방식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미국	한·인도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발급주체	수출자	-싱가폴 : 세관 -한국 : 세관, 자유무역관리원, 상공회의소	수출자	- 아세안 : 정부기관*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단, 개성공업 지구의 경우 세관에 한정)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인도 : 수출 검사위원회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 자율발급 :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하는 방식

\* 기관발급 : 세관 등 권한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 정부기관 :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태국 ; 상무부, 인도네시아 · 베트남 ; 통상부, 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필리핀 · 싱가포르 ; 세관

##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 2개국이상 걸쳐 생산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국내 생산과정에서 부여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 세번변경기준

외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 부가가치기준

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예 : 자동차)

### 특정공정기준

특정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예 : 의류의 재단 · 봉제기준)

### 역외가공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나, 일정조건 하에서 일부공정이 FTA 체결국 영역밖에서 수행된 물품에도 인정하는 특혜 (예 : 개성공단 생산제품)



## FTA 원산지검증

-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상대국 세관의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 세관당국이 개시

※ 원산지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단, 한·아세안 FTA의 경우 3년)으로 원산지 검증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동안 적용받은 협정관세와 벌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 검증방법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검증방식	직접검증	직접검증	제한적 간접검증	원칙 : 간접검증 예외 : 직접검증	간접검증
조사주체	수입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입국 세관직원 참여)		수출국 세관

\* 간접검증 :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또는 세관에 의뢰하여 조사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직접 조사 (서면 / 방문)

\* 제한적 간접검증 :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조사를 의뢰하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 가능

## FTA 원산지검증 요청현황

- 원산지 검증 요청건수는 선진국일수록 더 많으며, 한·미, 한·EU FTA 발효시 원산지 검증 요청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 아국 수출물품에 대한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현황 〉

(건, '10.1월말 기준)

구분	스위스	베트남	노르웨이	칠레	계
건수	17	2	1	2	22

### 〈 외국 수출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산지검증 요청현황 〉

(건, '10.1월말 기준)

구분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칠레	계
건수	16	6	6	2	7	5	1	3	1	2	49

##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란?

-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 통일상품분류체계 (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  
(예 : 천연진주 ⇒ 7116.10-1000 부여)
- 2단위는 '류', 4단위는 '호', 6단위는 '소호'라고 부름

71  
류  
16  
호  
• 16  
소호  
• 1000

우리나라는 10단위 사용,  
미국·EU 8단위 사용,  
일본 9단위 사용

HS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 사용

7단위 이하는 국가별로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사용



## ▣ 품목분류 확인방법

### ○ 품목분류 간편 확인방법

- 품목번호는 관세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등 관세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 확인 가능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서비스 이용

- 홈페이지 : <http://call.customs.go.kr>
- 전화 : 국내 1577-8577 / 해외 02-3438-5199
- 직접 방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서울세관 10층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품목분류 → 품목분류 검색

###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용

- 통관 실적이 없는 물품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확인  
전화 : 042-930-3630

- 통관 실적이 있는 물품

특별한 형식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세관에 서면으로 질의 또는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를 이용한 질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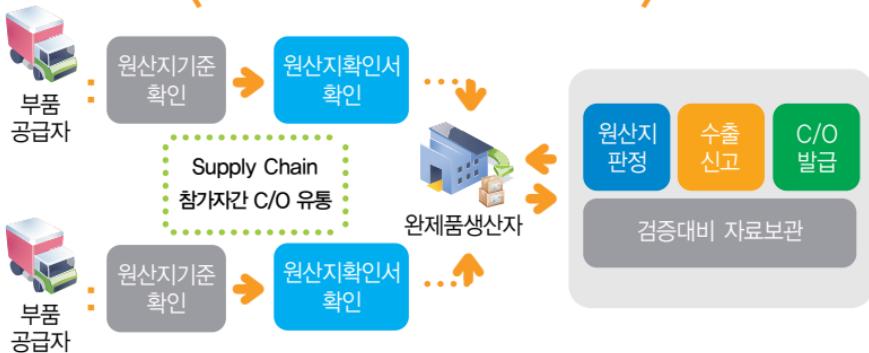
## ▣ FTA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 ○ 부품 및 완제품의 원산지 확인에서부터 기업간 원산지 확인서 제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을 위한 관련자료의 보관 · 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적 ·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전산지원 시스템

### ○ 이용방법

현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 후 무료 이용 가능하나, 추후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해 무료 Download 가능하게 하여 국내기업 모두가 이용하게 할 예정

### FTA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요도





## ▣ 세관인증수출자 제도 (Customs Approved Exporter)

- 매 수출신고 건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상대국에 제출하는 것은 번거롭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업체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법규준수도가 높은 수출물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선별하여 세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 지정요건 ■

####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보유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자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관의무를 준수하는 자
- 최근 2년간 FTA특례법령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는 자

####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
-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자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관의무를 준수하는 자

### ■ 구비서류 ■

-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 인증 신청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 서류

### ■ 지정혜택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신청서 이외의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 생략
-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생략 (전산시스템 이용 용이)
- ※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에 해당되어야만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 세관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 FTA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당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구 분	내 용
신 청 자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 생산자
심사대상	원산지 결정의 충족여부
제출서류	사전심사신청서,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한 · EFTA, 한 · 인도 FTA에 한하여 적용

## ▼ FTA 활용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 성공사례

### 〈활용내용〉

- 활용전 : OEM 방식으로 일본에서 생산하여 8% 관세적용하여 국내수입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국 관세율 적용
- 활용후 : OEM 생산 국가를 FTA 체결국인 말레이시아로 변경  
국내 수입시 및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 무관세 · 저세율 적용

### 〈활용효과〉

- 클렌징폼 1개 품목에서 관세 6억원 절약 → 가격경쟁력 향상 / 수출확대

## | FTA 활용 전 |

- 화장품 OEM 생산 후 수입 과정



## | FTA 활용 후 |

- OEM을 체결국으로 변경 후 수입 과정



## ○ 실패사례

- 수입물품 :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금괴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6단위 품목분류 세번이 바뀌어야 하는 품목)
- 한·EFTA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세번이 바뀌지 않았음)
- 국내 12개 수입자에 대하여 약 175억원의 관세 추징 조치



## FTA 협상분과 구성

구분	상품				원산지 및 통관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투자	기타규범				
	시장 접근	무역 구제	농업 (협력·SPS)	TBT	원산지	통관 무역 원활화	국경간 서비스	일시 입국	통신	금융		지재권	정부 조달	경쟁	노동	환경
대표 부처	외교부	농수산부	지경부	재정부 외교부	재정부		재정부 외교부			지경부 외교부	외교부	지경부 재정부	외교부			
참여 부처	재정부 농수산부 지경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관세청 산림청	외교부 지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관세청 산림청	외교부 관세청	지경부·노동부·법무부· 국토해양부·농림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무역위원회				법무부	법무부 · 문체부 · 특허청	조달청 · 특허청	재정부·환경부 · 공정위원회				

## FTA 협정 이행기관

- 이행위원회 참여 : 기획재정부 · 외교통상부 · 관세청 · 쟁점 관련 부처
- 원산지증명서 발급 : 관세청, 상공회의소, 수출자 · 생산자(자율발급의 경우)
- 인증수출자 지정 : 관세청
- 원산지 검증 : 관세청
- 외국 현지 통관애로 해결지원 : 관세청

## FTA 활용 정보는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을  
활용하시면 더욱 쉽고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FTA 종합정보 제공으로 **기업의 정보수집 비용 절감**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하여 **One-Stop 업무처리체제 구현**
- 기업 참여 Contents 마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FTA 구현**

## FTA

활용정보검색은 <http://fta.customs.go.kr>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경제단체, 유관기관, 수출입업체 등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토대로 활용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전산지원시스템 개발 등  
FTA 활용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 관세청 FTA Global Center (2010. 4월 개소)

- 설치목적 : 우리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연구, 교육, 컨설팅, 정보 등 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4-9, 성남세관 빌딩내
- 입주기관 : 관세청 FTA이행팀,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지원센터, 전산지원센터 등
- 주요기능
  - 연구 : 우리기업들의 효과적인 FTA 활용관련 지원시책 개발 · 보급
  - 교육 : 중소기업 직원 등의 FTA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센터 운영
  - 컨설팅 : 사후검증 대비 특혜원산지증명 발급 Data/전산 관리능력 지원
  - 정보제공 : 체결상대국 및 주요 산업별 · 품목별 FTA활용 정보제공
  - 전산지원 : 중소기업이 동시 이용할 수 있는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 보급